< 성인지 예산서 개요 >

◈ **성인지예산제도(性認知豫算制度, gender-responsive budgeting) :**

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·집행하고,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

◈ **대상회계 :** 일반회계, 기타 특별회계, 기금

◈ **대상사업**

-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

구 분	대 상 사 업	비 고
필수	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	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
	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	성별영향분석평가법(2015.8.4.시행)에 따른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
권장	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	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,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

◈ **제외대상 :**

○ 행정운영경비 :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

○ 재무활동 :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

○ 예비비 : 사업을 특정하거나,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

◈ **성인지 예산서 성격 :**

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,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, 성과목표,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